

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4년 3월 23일 이정임의원외 9인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24일

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배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05. 2. 25)시 의원 발언 방해와 의제외 발언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
- 지방자치법 제74조, 제76조, 제78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.

3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1명 (위원장1, 간사1, 위원 9)

나. 존속기간 :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
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징계 요구된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0조(위원회설치)
-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(특별위원회)

5. 질의및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생 략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생 략

9. 기타필요한사항 : 생 략